

판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주)삼양종합설비 승소판결

(주)삼양종합설비(대표이사 정원준)는 지난 1998년 4월 8일 강동교육청 산하 거원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경도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도급공사를 중도 포기하게 되었고, 나머지 공사는 송산종합건설(주)가 인수받아 완공함에 따라서 공대금채권과 관련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의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김철환)으로부터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사건 98가단49129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삼양종합설비

대표이사 정원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피고보조참가인 민○○

변론종결 1999년 9월 1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66,530원 및 이에 대한 1998년 10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

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 정○○, 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경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998년 4월 8일부터 피고 산하 거원중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를 총 공사대금 1,568,475,695원(당초 금 1,617,622,000원이었다가 나중에 변경됨)에 도급받았다.



(2) 그런데, 위 경도종합건설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8년 4월 7일 금 1,8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8타기 6437, 6438호로써 위 경도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사 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1998년 4월 13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시경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1998년 4월 27일 위 경도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설비공사를 금 124,966,530원에 하도급받아 그 시경 위 설비공사에 착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위 경도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하

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설비공사를 중단하였다.

(4)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8년 7월 10일 위 경도종합건설 및 원고를 만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자신이 전부받은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상당인 금 124,966,530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 125,966,530원을 직불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5) 이에 원고는 그 시경으로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1998년 11월 초순까지 하도급받은 위 설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공사 도중인 1998년 8월 20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기성공사 대금조로 금 56,000,000원을, 1998년 10월 2일 위 경도종합건설로부터 금 24,2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6) 그런데, 위 경도종합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998년 9월 28일 위 도급공사를 중도 포기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소외 송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인수받아 완공하기로 하였는데, 위 경도종합건설과 위 송산종합건설은 1998년 10월 7일 기성공사에 대하여 당초 금액 1,568,475,695원의 73.14%인 금 1,147,243,821원(그중 설비공사 부분은 당초 도급금액 174,983,609원의 71.76%인 금 125,575,382원)의 기성고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의 공사는 위 송산종합건설이 마치기로 공사타결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송산종합건설은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쳤다.

2. 양수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도종합건설은 1998년 9월 28일 위 도급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총 1,147,243,821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경도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았던 것이며, 원

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그가 전부받은 위 공사대금채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금 124,966,53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미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44,766,530원(=124,966,530 - 56,000,000 - 24,200,000)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보조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금 124,966,53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또 피고가 하도급을 받은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을 직불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합의 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위 경도종합건설이 당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그 계약서와 같이 완공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공사비 금 1,568,475,695원을 전액 수령한다는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위 경도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위 경도종합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은 앞서 본 바

와 같이 위 송산종합건설과의 공사타절 합의에 따라 당초 도급금액의 73.14%인 금 1,147,243,821원(설비공사 부분은 71.76%)으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은 위 송산종합건설에 귀속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채권업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도 위 타절된 공사대금에 한하여 유효하게 되었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당초 약정한 하도급공사대금 124,966,530원 중 위 설비공사 타절 비율인 71.76%에 해당하는 금 89,675,981원(=124,966,5301.76/100)에 한하여 위 경도종합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잔여공사를 인수한 위 송산종합건설로부터 변제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 89,675,981원에서 이미 변제된 금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475,981원(=89,675,981-56,000,000-24,200,000)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 양도 및 합의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경도종합건설이 당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그 계약서와 같이 완공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공사비를 전액 수령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의 채권업류 및 전부명령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화보조치를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그 공사를 재개시킬 의도로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합의각서까지 작성하였던 것인데, 나중에 원도급자인 위 경도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위 채권업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금액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66,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년 10월 15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설비 *